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이식수목가이식장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받아 2014. 7. 14. 광주광역시 서구 ○○로 ○○○(○동)에 있는 (주)○○○○○○○ (대표자 ○○○)와 3개사<sup>1)</sup>와 ‘○○○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15,743,320,000원<sup>2)</sup>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7. 21. 착공하여 2018. 12. 3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1. 23.)」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

1) 전라남도 ○○군 ○○면 ○○로 000 ○○○○건설(주) 대표자 ○○○, 경상북도 ○○군 ○○읍 ○○○길 00-0에 있는 ○○건설(주) 대표자 ○○○, 전라북도 ○○시 ○○구 ○○○○길 0-0(○○동) (유)○○○ ○건설 대표자 ○○○

2) 2017. 6. 1. 총 공사부기금액 15,906,163,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의 측점 0+800부터 측점 5+700까지 4,900m 구간은 기존 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구간으로서 기존도로 양측에 심어져 있는 기존 가로수 341주는 이식수목가이식장(3,344㎡)을 부지임대하여 가이식하는 것으로 설계 하였으나, 2015. 12. 20. 기존 가로수 341주는 인근 ○○○○○ 일반산업단지<sup>3)</sup> 부지내 공원부지로 이식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2공구)’에 기존 가로수 341주는 인근 ○○○○○ 일반산업단지 부지내 공원부지에 이식을 완료 하였으므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식수목가이식장 부지임대료를 설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7. 9. 29.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식수목가이식장 부지임대료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47,410,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이식수목가이식장 부지임대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47,41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